



# 개인형 이동장치(PM) 이용안전 수칙

## 개인형 이동장치(PM)란?

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

1. 25km/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
  2.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
  3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인 신고가 된 것일 것
- ※ 종류 :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



### 면허(원동기 이상) 소지자만 운전

- ☑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
- ☑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



### 신호위반, 보도주행 금지

- ☑ 위반 시 범칙금 3만원



###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켜기

- ☑ 위반 시 범칙금 1만원



### 음주 운전 금지

- ☑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, 운전면허 정지(취소)
- ☑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원



### 동승 금지

- ☑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



### 주행 중 휴대폰, 이어폰 사용 금지

- ☑ 안전의무 위반 시 범칙금 2만원



### 안전모 착용

- ☑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



### 안전하게 주차하기

- ☑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2만원



# 개인형 이동장치(PM)

## 여기에 주차해 주세요



자전거 주차장(비가림형)



자전거 주차장(일반형)



PM 주차구역

## 여기는 주차하지 마세요



차도 및 자전거도로



횡단보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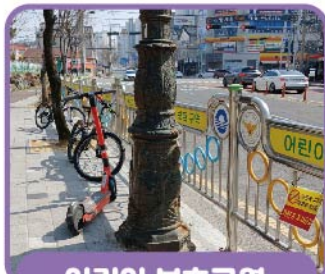
보도 중앙



점자블럭 및 교통섬



건물 진출입로



어린이 보호구역



소방시설 5m 이내



버스정류장, 택시승강장, 경전철역 출입구

### PM 안전하게 타기

3단계

행동 수칙



✓ **이용 전**  
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 
(안전모, 보호대, 야간등, 야광띠)

✓ **이용 중**  
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 
(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,  
2인 동승 금지, 음주운전 금지)

✓ **이용 후**  
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 
(인도, 도로, 횡단보도, 버스정류장 등  
통행에 방해되는 곳 주차 금지)